

의정부지방법원 2021. 6. 22 선고 2020나903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고,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B

변 론 종 결 2021. 5. 18.

판 결 선 고 2021. 6. 22.

제1 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0. 1. 30. 선고 2019가소14190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2. 6. 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추가판단을 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는, 피고가 아무런 권원 없이 원고가 송금한 400만 원을 통장으로 입금받았으므로 부당이득으로 400만 원의 반환을 구한다고 주장을 한다. 피고가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기 위해서는 입금액 상당의 돈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하는데, 피고는 통장개설이 어렵다는 C에게 통장을 개설하여 양도하였을 뿐이고, C가 원고를 속여서 그 통장으로 400만 원을 입금받아 사용한 것이어서 피고가 입금액 상당의 돈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황현찬, 판사 이효두, 판사 박이규